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정 2010. 3. 18.

개정 2011. 8. 11.

개정 2011. 12. 15.

개정 2012. 8. 2.

개정 2015. 4. 10.

개정 2018. 3. 20.

개정 2018. 11. 21.

개정 2019. 10. 4.

개정 2021. 11.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0.>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1.>

1. 안성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안성시소속 공무원(안성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8.11., 2021.11.2.>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추천위원회는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원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계획에는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기 중 결원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공고 한다.

④ 공고내용은 임용예정 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 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⑧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의 장이 주관하여 공단 임원인사부서에서 실시하며, 접수방법은 인터넷접수를 하되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⑩ 이사장은 우수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1.]

**제9조의2(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공단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1.21.]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11>

1. 지원서 【별지 제3호 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8.11>

-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
-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별표2]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8.11>
-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안성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1]
- ⑤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8.11]

⑥ 안성시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및 세부지급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1.12.15]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 기관 또는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8.11.><개정 2019.10.4.>

**제1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1]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1.8.11]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11.8.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11조 관련) <개정 2021.11.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li> <li>·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li> </ul>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li> <li>·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li> </ul>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li> <li>·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li> </ul>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li> <li>· 관련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li> </ul>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li> <li>·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li> </ul>

[별표2] (제13조 관련) <개정 2011.8.11., 2012.8.2., 2021.11.2.>

## 이사장의 직무수행요건

### 1. 담당 직무

####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공공시설물관리운영, 생활쓰레기청소 등 안성시의 위탁업무 수행

####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 정도
안성시 및 시의회 관련 업무	매우중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관련 업무	매우중요
타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매우중요
외부고객 관련 업무	매우중요
시민단체·언론기관 관련 업무	중요
노동조합관련업무	매우중요

####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 정도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중요
중장기적 비전 설정	매우중요
중장기적 목표 설정	매우중요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결정	매우중요
사업진도 점검 및 문제·장애 극복	중요
성과에 따른 보상	중요

####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 정도
개인별·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중요
조직 역량 제고	매우중요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매우중요
직원의 복지후생	중요
사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중요

마. 기타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 정도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유도)	매우중요
담당기능(사업)의 변화 추구	매우중요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 및 안정 운영	중요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중요
조직간 통폐합 등 슬림화 추진	중요

2. 직무수행요건

가. 자격요건 및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능력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업경영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제한 없으나,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경영학

- 회계학· 무역학 분야가 유리
- 경력 : 근무예정분야 기업체 경영 경력자 및 공직 또는 유사직종 근무 경험자 유리

## 상임이사의 직무수행 요건

### 1. 담당직무

가. 법령, 조례, 규정 상의 담당직무

-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관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짐
- 이사회외의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 의결함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중요 정도
1	안성시 및 시의회 관련 업무	중요
2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관련 업무	중요
3	타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중요
4	외부고객 관련 업무	매우중요
5	시민단체·언론기관 관련 업무	매우중요
6	노동조합관련업무	중요

다. 공단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중요 정도
1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중요
2	중장기적 비전 설정	중요
3	중장기적 목표 설정	중요
4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수립	매우중요
5	사업진도 점검 및 문제·장애 극복	매우중요
6	성과에 따른 보상	매우중요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중요 정도
1	개인별·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중요
2	조직 역량 제고	매우중요
3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매우중요
4	직원의 복지후생	중요
5	사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매우중요

마. 기타관련 업무

구분	주요업무	중요정도
1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유도)	중요
2	담당기능(사업)의 변화 추구	매우중요
3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 및 안정 운영	중요
4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매우중요
5	조직간 통폐합 등 슬림화 추진	중요

## 2. 직무수행요건

### 가. 법령·정관상 자격요건

구분	
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li> <li>○ 지방공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li> <li>○ 공단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행할 역량을 가진자</li> </ul>

### 나. 분야별 능력 요건

구분	주요업무	중요정도
1	혁신과 변화 주도 능력	크게요구
2	리더십	크게요구
3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요구
4	전문성	크게요구
5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	크게요구
6	비전과 경영전략 제시 능력	상당히요구
7	의사전달 및 협상·섭외 능력	상당히요구
8	윤리(청렴,준법,도덕)성	크게요구
9	지역실정 및 주민정서 이해 정도	상당히요구

### 다. 기타(자질, 자격, 경력, 학위 등) 요건

####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경영학·회계학·무역학 분야가 유리

## 비상임 이사의 직무수행요건

### 1. 담당 직무

####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
-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 정도
안성시 및 시의회 관련 업무	매우중요
외부고객 관련 업무	매우중요
시민단체·언론기관 관련 업무	중요

####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 정도
이사회 관련업무	매우중요
공단의 경영관련 제언 및 자문	중요
조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전제	매우중요

### 2. 직무수행요건

#### 가. 자격요건 및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능력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상임이사로서 공단의 경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자
- 공공시설물관리운영, 생활쓰레기청소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수집력, 조사능력, 문제해결력
- 공단의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높고 엄격한 윤리성(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 공단의 경영방향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견 제시능력

- 공단 발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건전한 대안 제시능력
- 학력 제한 없으나,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경영학·회계학·무역학 분야가 유리
- 경력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 예산 및 회계 분야 경험 또는 경제분야 행정경험
- 기타 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소양과 여론수렴능력

【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 관련) <개정 2011.8.11>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회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0000년 0월 일  
 심사위원 :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 관련) <개정 2021.11.2.>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 환경변화에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 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 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관련) [신설2011.8.11.]<개정 2015.4.10.>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호	-			
		주 소				
		전 화	[주택] ( ) -	휴대폰		E-mail
		[직장] ( )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약력 및 학력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회의록 공개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 관련) <개정 2011.8.11>

### 임원 후보자 추천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 별첨 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 )		
	( )		
	( )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 생년월일은 ‘○○.○○.○○(예 : ’ 55. 5.25)로 기재
-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별첨 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명	현직	추천사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 관련) [신설 2011.8.11.]

##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 2. 모집개요

#### 가. 1차 공고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 ~ 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